

## 농업기계용 석유류 면세 정책 2007년 6월말 종료 정부, 난립한 조세감면 정책 축소키로... 관련법 개정안 6개월째 표류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는 농업기계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정책이 내년 6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면세 기간을 연장하는 관련법률 개정안이 6개월째 표류하고 있어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대책마련이 농축산업계에 주문되고 있다.

농업기계와 시설농가 및 축사의 난방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정책은 농축산인의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외국 농산물에 대한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의 조세감면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근거를 두고 농림부가 각 농작업기와 난방용 유류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 필요량을 계절별, 지역별, 시설별, 사육수수 등의 규모 등을 감안해 고시하고 농협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농업용 면세유류 정책을 명시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시한이 내년 6월말로 다가오면서 관련법 개정 여부가 농축산업계 새로운 이슈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김재민 기자  
축산경제신문

### 정부재정적자 폭 줄이기 복지예산 확보위해 조세감면 제도 대폭 축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일몰시기는 내년 6월말로 아직 기한이 많이 남아 있어 법 개정을 하면 다시 연장이 가능하다는 낙관론도 있기는 하지만 정부의 정책기조를 살펴보면 법

개정을 통한 세금감면연장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재정적자 폭이 매해 늘어나고 복지 예산 등에 대한 자원마련에 정부가 힘을 쏟으면서 난립한 세금감면 정책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최근 일몰되는 세금감면 법안에 대한 연장 의사가 없다는 확고한 의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변하자 각종 압력단체들의 의원로비가 줄을 잇고 있고 압력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의원들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4월 이후 무려 12개가 국회 재정경제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여기에 소득세법, 법인세법, 특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정부의 세금감면 정책 축소 의지와는 반대의 상황이 국회에서는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로 세금을 감면 받아야 하는 산업과 분야까지도 도매금으로 정부재정을 고려치 않는 선심성 법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농업기계용 난방용 유류 면세 정책 자동 소멸될 판

이러한 분위기와 내년도 정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농업기계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정책도 자칫 자동 종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농림부 담당 사무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에 의거 매년 5월 31까지 농업인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 건의서를 재경부에 올려 연장을 건의하고 있지만 최근 재경부가 무분별한 면세제도를 대폭 정리해 재정적자폭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연장 가능성에 대해 확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국회 재경위 간사인 엄호성 의원이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시한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명의 의원과 지난 4월 17일 공동 발의하긴 했지만 지방선거와 정쟁 속에 파묻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 엄호성 의원측에 9월 임시국회 때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를 했지만 장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 자칫 내년으로 처리 기한이 넘

어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내년에는 대선과 총선이 맞물리는 특수한 해임을 감안할 때 올해 회기 안에 이번 엄호성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는 면세유의 혜택이 농축산업계에 사라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축산업계를 비롯한 농업계에서는 한·미 FTA를 비롯한 농축산업계 굵직한 현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향후 개발 부담금 논란과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양계산업을 비롯한 전 농·축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

면세유류를 사용하는 작업기를 많이 사용하는 경종농업에 비해 축산업은 유류 사용빈도수는 뒤지지만 겨울철 난방을 해야 하는 가금산업의 경우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손익이 대량사육을 통해 사육수당 천원 단위에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할 때 양계용 난방유류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사라질 경우 가뜩이나 생산비에서 엄청난 차이를 내고 있는 수입양계산물과의 경쟁은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닭의 생육온도는 다른 축종과 달리 28℃로 높기 때문에 난방비용이 시설채소와 원예 등

## 10

을 하는 농가보다 더욱 많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양계협회에 따르면 1,000평의 농장을 운영하는 농가가 면세석유류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월 400~500만원이 소요되는 난방비는 월 800만원에서 1,100여만원까지 급등하게 된다.

여기에 유류부족으로 적정온도보다 낮은 온도로 난방을 할 경우 체온유지를 위해 닭들이 사료섭취량을 늘리기 때문에 겨울철 양계산물의 생산비는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어 유류비와 사료비용 상승 등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 현재 지원되고 있는 면세유류도 사용량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면세유의 가격도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상승하다가 최근 유가가 급등하면서 면세유가격도 급등해 농가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면세 정책의 지속은 물론 사용량의 현실화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만약 농축산업 기계류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이 종료될 경우 기계류 의존도가 높은 경종 농가는 물론 겨울철 난방이 필수적인 육묘·채소·버섯·화훼·과수 등 시설재배 농가와 양계·양돈·오리·누에·관상조류 등 축산농가의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일부 산업의 경우 겨울철 시설재배와 가축사육 포기 시나리오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 FTA 확대로 인한 농축산물 개방 폭 증가 경쟁력 유지위해 면세유류 정책 지속돼야

UR협정을 비롯한 FTA확대 등으로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07년 6월말로 한정되는 조세감면 제도의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만약 한·미 FTA가 성사되고 주요 농축산물 선진국과의 자유무역이 확대될 경우 20% 내외로 부과되고 있는 주요 축산물의 관세는 철폐돼 가격 경쟁력은 사실상 상실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게다가 유류에 대한 조세 감면 제도마저 사라진다면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 유가 급등으로 농가경쟁력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세금부과는 농가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기계화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될 상황에서 농축산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경감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면세유의 계속공급과 더불어 면세유의 시중 불법유통에 따른 유통질서 물란 및 조세 탈루 등 해묵은 논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면세유 유통과정에 대한 감시 장치의 강화가 함께 요망된다. 